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2. . .	
연월일	(제 회)	

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제도 도입 이후 실제 인증사례가 전무한 도서·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규정 폐지(「문화예술진흥법」 일부개정/ '22.9.27. 공포, '23.3.28. 시행)에 따라, 같은 법 시행령 개정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 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조문 정리

1) 현행 제21조, 제23조 삭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및 제2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1조(도서·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) ①법 제15조에 따른 도서·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과 자산총액이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 상일 것</u> <u>2. 전년도에 상품권 총 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</u> <u>3. 전체 가맹점 수 및 연간 상환 액 규모 중 도서·공연·영화 등 문화예술 재화나 용역을 구 매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및 그 가맹점으로부터의 상환액 규 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</u> <u>② 삭제</u>	<u><삭 제></u>
<u>제23조(도서·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) ①법 제15조에 따 른 도서·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</u>	<u><삭 제></u>

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매년 4월 말까지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 결정을 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,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도서·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⑤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과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.

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514